

## **[주주 제안권]**

주주제안권이란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의제와 의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
### **제안권자**

상법은 주주제안권의 행사 요건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.5%를 6개월 동안 계속하여 보유한 주주도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### **행사방법**

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주총일의 6주전까지 이사(대표이사)에게 서면으로 제안하여야 하며, 회의목적으로 할 사항을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한 의안의 요령을 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### **주주제안권의 효과**

주주제안권을 접수 받은 이사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며, 그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.

### **의결권 행사방법**

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1.직접참석에 의한 의결권 행사 2.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, 서면투표 및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 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.